

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

〈지난호에 이어〉

3-6.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

○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출

$$\text{오염물질 배출량(kg)} = \text{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} \times \text{부과기간중의 조업일수}$$

-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: 일일평균 배출량 - (방류수 수질기준 농도 × 일일평균 유량)
- 일일평균 배출량 :

$$\frac{\text{자기측정한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}}{\text{자기측정 횟수}}$$

* 점검기관에서 오염도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:

$$\frac{(\text{자기측정에 의한 일일평균 배출량} + \text{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})}{(\text{검시통보 횟수} + 1)}$$

-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: 측정당시 농도 × 일일유량
- 일일평균유량 : 일일평균 배출량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
-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정
 - 부과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실측을 하여 사업자에게 통보(분기 1회 이상)
 -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
 - 확정배출량 미제출 : 점기관에서 검사한 결과(검사배출량)를 적용하고 20% 가산
 - 예정배출량 미제출 : 부과결정액의 10%가산

- 예정 · 확정배출량 미제출 : 허가 · 신고시의 최대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산정
-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% 이상 적은 경우 : 검사배출량을 적용하고 20% 가산

〈부과시기 및 감면등〉

- 부과시기

- 초과부과금 : 배출허용기준 초과시마다 부과(종전과 동일)
- 기본부과금 : 반기별로 구분하여 연 2회 부과
 -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

- 감면대상 및 범위

- 5종 사업장 : 전액 면제
-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자 : 전액 면제
-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자 : 전액 면제
- 당해 부과금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장
 - 6월 이상 1년내 : 100분의 20,
 - 1년 이상 2년내 : 100분의 30
 - 2년 이상 3년내 : 100분의 40,
 - 3년 이상 : 100분의 50

- 폐수 재이용율에 따른 감면(영 제23조제2항 제4호)
 - 재이용율에 따라 20%~90%까지 감면
- 부과금의 조정
 - 요 건 : 확정배출량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
 - 조정방법 : 허가·신고서 제출한 관련자료,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, 자가측정기록부, 점검기관의 오염도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재산정

3-7. 부과금의 조정 등 (징수유예, 분할납부)

징수유예 및 분 할납부 대상사유	징수유예 기 간	분할납부 횟 수	비 고
-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사업자의 심한 재산손실시	1년이내 (3년이내)	6회이내 (12회이내)	()는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이상 초과, 좌측사유가 계속될 경우
- 사업의 현저한 손실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			

3-8. 체납처분

- 체납처분 사유
 -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- 담보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 -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3-9. 징수된 배출부과금의 관리

-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.

3-10. 배출부과금 부과·징수 및 사후관리

3-10-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

- 기본부과금

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

3-10-2 초과부과금

-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

개선완료 보고를 받은 후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

행정처분에 따른 명령이행보고를 받은 후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3-10-3 납부기한

-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하고, 공휴일, 일요일도 납부기한에 포함되며, 만료일이 공휴일,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.

-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※ 가산금부과요율 완화 : 100분의 5 → 100분의 3%(2004. 1. 1. 시행)

3-10-4 부과금 조정

- 부과금 부과기관에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에 착오를 일으켜 잘못 계산하였거나,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부과금을 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.

- 사업자가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과금의 납부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3-10-5 징수유예

- 부과권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업자가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-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,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.
- 부과금이 납무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)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“나”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향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- “다”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, 그 기간중의 분할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.
- 징수유예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징수유예는 납기전에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.
- 납부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최소할 수 있다.
 - *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- *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
 - *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환경기술인 제도(법 제47조)

4-1. 환경기술인의 임명 · 개임신고

-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

- 임명신고는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와 동시에,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5일이내. 다만, 1급 또는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범위내에서 4·5종 사업장 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음

-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기술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
<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관련사항>

제29조 (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)제4항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. (수질 및 대기 환경기술인 등)

제38조(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) :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(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)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미만 이어야 한다.

4-2.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

4-3.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(법 제67조)

구 분	환경 기술인
1종 사업장	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
2종 사업장	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
3종 사업장	수질환경산업기사,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인 이상
4·5종 사업장	배출시설 설치허기를 받은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기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

- 환경기술인, 방지시설업 등 환경산업체의 기술요원 등은 3년에 1회이상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함.

4-4.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

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
-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·보존에 관한 사항
-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·도지사 등이 지시하는 사항

자료제공 :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부
다음호에 계속…

산업환경네트워크 안내

대한상공회의소는 재생이 가능한 산업부산물을 수요·공급업체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산업부산물을 손쉽게 거래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, 기업들이 각종 환경영영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'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(<http://env.korcharm.net>)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동 사이트는 산업부산물 배출업체 또는 수요업체 쌍방이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한 산업부산물의 배출과 수요정보를 입력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적절한 거래상대를 찾을 수 있으며, 산업부산물 처리·재생업체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산업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환경영영정보를 통해서 환경친화경영, 국제환경동향, 국내환경정책, 지역환경개선, 환경일반 등 각 부문별로 데이터베이스(DB)화한 각종 환경관련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
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합니다.

사이트명	대한상의 산업환경 네트워크
도메인명	http://env.korcharm.net
주요정보	산업부산물교환정보, 처리/재활용처리업체 리스트, 환경영영정보, 기업환경건의센터, 주간 '대한상의 산업환경 디제스트'
주요특징	등록비·연회비·거래수수료가 전혀 없는 무료정보사이트

* 동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(TEL. 02-6050-3806, FAX. 02-6050-3810, E-mail. choi94514@korcharm.net, 담당자 : 최성우 주임)으로 연락하여 시스템 안내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